

의안번호	2217192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6. 7.23.
추 계 번호	26B119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4.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실시지역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9조의2 신설 (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	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재량규정
		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소속으로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등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이하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2항) 1.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시행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버스 공영제 등 도입·운영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2	안 제9조의2 신설 (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2항제14호), 관련 사업의 도입·운영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안 제12조제6호), 시장·군수가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시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 도입범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및 구체적인 재정지원 비율은 향후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항이며,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 지역, 운영 방식 및 규모, 운영 비용 및 운영 수입, 기존 운송사업자의 차량·설비 등의 인수 여부 및 보상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현시점에 관련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시장·군수가 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의 설치여부와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개최 여부, 횟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버스 공영제¹⁾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 화성시, 전주시-완주군(마을버스), 성주군(다만, '26년부터 민간 운영 중), 정선군, 양구군, 목포시, 신안군, 제주시[공영제(읍면지역) 및 준공영제 혼합 운영 중²⁾]가 운영되고 있음
 - 한편,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서 시행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에 대하여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

[표 1] 버스 준공영제 현황: 2025년 기준

지역	유형	비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관리형	광역버스
서울특별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부산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대구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인천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시내버스, 광역버스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대전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일부업체 제외
경기도	노선관리형, 수입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18년), 시내버스('24년)
충청북도 청주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경상남도 창원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전체

주: 1) 인천광역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중

2)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단계별로 추진 중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버스 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 준공영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남(창원)

[표 2]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2019	2,915	1,300	1,320	1,271	733	578	911	352	—	—	—
2020	1,705	1,881	1,819	1,906	1,162	1,000	985	879	—	—	—
2021	4,561	3,672	1,946	2,181	1,221	1,051	1,045	2,274	—	510	602
2022	8,114	3,056	2,577	2,648	1,380	1,166	1,190	2,953	—	660	826
2023	8,915	2,710	2,406	2,816	1,338	1,150	1,171	2,290	141	686	838
2024	4,000	2,600	2,209	2,514	1,364	946	1,193	6,525	148	717	856
2025	4,575	2,950	2,145	3,100	1,422	1,024	1,210	7,396	160	692	878

자료: 국토교통부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